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예고

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17일 영동군의회의장

- 1. 규 칙 명 :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
- 2. 개정이유
 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.
- 3. 주요내용
 - O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
- 4. 의견제출
 -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 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 - 다. 보내실 곳
 - 수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영동군의회(조례심사특별위원회)
 - 전 화: 043)740-3044, FAX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	「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
	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」

-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:
- 의견 제출자 주소 :
-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규칙안 내용	의견(찬・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

제1조(「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영동군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40조 및 제41조제4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제48조 및 제49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2조 중 "다음부터"를 "이하"로 한다.

제2조(「영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」의 개정) 영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60조"를 "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59조"로 하고, 같은 조 중 "(다음부터"를 "(이하"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"(다음부터"를 "(이하"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 중 "(다음부터"를 각각 "(이하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(다음부터"를 "(이하"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"(다음부터"를 "(이하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1.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「지방자치</u>	제1조(목적) <u>「지방자치</u>
법」제40조 및 제41조제4항에 따라 영동군수에게 서류 제출	<u>법」제48조 및 제49조제4항</u>
요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	
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서류제출 요구 대상) 영동	제2조(서류제출 요구 대상)
군수(<u>다음부터</u> "군수"라 한다)	<u>০] ন্ট</u>
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	
는 사항은 조례안 심사, 청원 심	
사, 예산안 심사, 행정사무 감	
사, 행정사무 조사, 군정에 대한	
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	
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	

2. 영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	제1조(목적) <u>지방자치</u>
법 시행령」제60조에서 규칙으	법 시행령」제59조
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의회(다	<u>(o)</u>
<u>음부터</u> "의회"라 한다)에 제출	<u>하</u>

되는 청원의 심사에 필요한 사	
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	
다.	_
제2조(청원서의 제출) ① (생 략)	제2조(청원서의 제출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	②
에 의한 의회 의원(다음부터	<u>(০) ট্ট</u>
"의원"이라 한다)	
제3조(받아들이지 않는 청원) ①	제3조(받아들이지 않는 청원) ①
의회 의장 <u>(다음부터</u> "의장"이라	<u>(o) ō</u> }
한다)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되는 청원은 접수하지	
않는다.	
2. 국가기관이나 영동군(다음부	2 <u>(০) ই</u> }
<u>터</u> "군"이라 한다) 또는 의회	
를 모독하는 것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청원의 심사) ① 의장은 청	제5조(청원의 심사) ①
원서가 접수되면 본회의에서 처	
리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	
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(다음	<u>(٥</u>)
<u>부터</u>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	<u>하</u>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7조(의견 청취) ① 본회의 또는	제7조(의견 청취) ①
위원회는 청원 심사에 필요할	

때에는 청원을 한 사람, 이해관	
계가 있는사람 또는 그 분야에	
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<u>(다음</u>	<u>(</u>)
<u>부터</u>	<u>하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